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5. 3. 2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세정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세무분야기구및인력보강을 내무부장관이 승인함에 따라 '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' 제21조에 의거 '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'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구의 본청 소속기관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음.

- 구본청 : 434명 <증21명>
- 보건소 : 46명 <변동사항없음>
- 동 : 264명 <증 1명>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본청 : 434명
2. 보건소 : 46명
3. 동 : 264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 (정원의 총수) 구의 본청 (이하 '구본청'이라 한다.)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구본청 : <u>413명</u> 2. 보건소 : 46명 3. 동 : <u>263명</u>	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. 1. 구본청 : <u>434명</u> 2. 보건소 : ----- 3. 동 : <u>264명</u>